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50
----------	-----

제출년월일 : 2000. 5. 3.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임진각 관광지내의 평화의 종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조례시행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입장료 징수 구분을 명확히 함.(안제2조)
- 나.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를 팀당 30,000원으로 정함.(안제5조, 별표 2)
- 다.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에 대한 요금을 면제 함 (안제6조)
- 라. 입장료 징수등 필요한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

파주시공통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파주시공통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공통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한다.

제1조중 “제35조”를 “제64조”로 하고 “공통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관광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만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유치원, 초등학교)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고등학교)
3. 성 인 : 만19세 이상인 자
4. 군 경 : 전투·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중 “지정 고시한”을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한”으로 한다.

제6조제3호중 “6세”를 “만3세”로 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명칭, 위치중 임진각주차장란을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 940-4068)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박재홍
	관광정책담당	김진성
	담당자	이성근

[별표 1]

입 장 료

관광지 명	구 분		금 액
공통 관광지	개 인	성 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 체	성 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100원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 명	구 분		금 액
공통 관광지	주 차 료	승용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 차 료	승용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4,000원
	평화의 종 타종		팀당 30,000원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파주시공통국민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국민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만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하사 이하의 군인 포함)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하사 이하의 군인 제외) 4. 노 인 : 65세 이상인 자 5.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 -- 제64조 ----- -- 관광지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만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유치원, 초등학생)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고등학생) 3. 성 인 : 만19세 이상인 자 4. 군 경 : 전투·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징수구역) ----- 관광진흥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	근거규정 개정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근거규정 삽입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5. (생략) < 신 설 > 7. (생략)			제6조(요금의 면제) ----- ----- ----- 1.~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 이하의 어린이 4.~5. (현행과 같음) 7.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자 1인. 8. (현행 제7호와 같음)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요금 면제규정 신설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u>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 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 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u>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u>																																					
[별표1] 입 장 료			[별표1] 입 장 료			업무위탁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금 액</th></tr><tr><td rowspan="3">개 인</td><td>어 른</td><td>500원</td></tr><tr><td>청소년·군경</td><td>300원</td></tr><tr><td>어 린 이</td><td>200원</td></tr><tr><td rowspan="3">단 체</td><td>어 른</td><td>300원</td></tr><tr><td>청소년·군경</td><td>200원</td></tr><tr><td>어 린 이</td><td>100원</td></tr></table>			구 분		금 액		개 인	어 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 체	어 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100원	<table><tr><th>관광지별</th><th>구 분</th><th>금 액</th></tr><tr><td rowspan="6">공 룹 관광지</td><td rowspan="3">개인</td><td>성 인</td><td>500원</td></tr><tr><td>청소년·군경</td><td>300원</td></tr><tr><td>어 린 이</td><td>200원</td></tr><tr><td rowspan="3">단체</td><td>성 인</td><td>300원</td></tr><tr><td>청소년·군경</td><td>200원</td></tr><tr><td>어 린 이</td><td>100원</td></tr></table>			관광지별	구 분	금 액	공 룹 관광지	개인	성 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체	성 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구 분		금 액																																						
개 인	어 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 체	어 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100원																																						
관광지별	구 분	금 액																																						
공 룹 관광지	개인	성 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체	성 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100원																																					
용어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2] 시설사용료			[별표2] 시설사용료			임진각 관광지 추가 삽입 및 평화의종 타종시 팀당 30,000원 정수
구분		금액	관광지별	구분		금액
주차료	승용차	1,000원	<u>공 룡</u> <u>관광지</u>	주차료	승용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대형차	2,000원
야영장	- <u>소형천막</u> (1일 기준) - <u>대형천막</u> (1일 기준)		<u>임진각</u> <u>관광지</u>	주차료	승용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4,000원
				<u>평화의 종 타종</u>		팀당 30,000원